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3. 6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2. 2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 2. 26.
- 다. 상정일자 : 제7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1. 3. 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 해 석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마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포구민이 환경보전시책과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에서 마포구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주요 환경 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 활동,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구 4급이상 공무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된 행정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마포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포구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구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 그리고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음.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음.

위원회는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와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환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과 구의제21 추진에 관한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마포구의제21"은 마포구가 "작성하는 지방의제 21 (Local Agenda 21) 로서,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세계각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만들도록 권고하였음.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꽃이라고 평가받는"지방의제 21"에 대한 서울시 각 자치구별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 12월 31일 현재 21개구는 기히 작성을 하였고 마포구 포함 4개구는 추진중에 있어 우리구는 친환경적인 행정실천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역 각계각층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의 산물로서 지방의제 21이 작성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환경담당부서 전담직원 1명이 관장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추진력이 미흡한 실정임.

지역적 특성과 전통을 살리고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의제 및 행동계획이 제시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반 구성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환경보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가 전제되는 만큼, 환경백서의 발간은 물론 인터넷상 환경정보망 구축으로 행정의 과학화 및 다양한 환경분야 자료를 공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 제3조 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행정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 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 위원수와 분과위원회 조직의 타당성 그리고 합리적인 환경전문가의 민간위원위촉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위원) :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에 대하여 활동비 지급여부는 ?
- 답변요지(정해석환경과장) : "구의제21"수립후 수반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함.
- 질의요지(박영길위원) : 감시활동은 위원이 하나 ,위원이 위촉한 자가 하나 ?
- 답변요지(정해석환경과장) : 위원회에서 위촉한 하부조직이 활동함.
- 질의요지(이종일위원) : 위원중 환경과장은 참여할 수 있나?
- 답변요지(최승범생활복지국장) : 환경과장은 간사로 참여함.
- 질의요지(윤정용위원) : 환경시책의 교육방향은 ?
- 답변요지(정해석환경과장) : 각종교육(민방위대원교육등)시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코자 함.
- 질의요지(조영천위원) : 늦은감이 있으나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함.
- 질의요지(임종철위원) : 위원회를 구성하면,구에서 위촉한 환경감시단과 업무가 중복되는등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을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정해석환경과장) : 위원회 구성은 민,관,전문가가 1/3 씩 구성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2. 2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마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포구민이 환경보전시책과 환경오염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에서 마포구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활동,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구 4급이상 공무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된 행정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2000.10.5, 조례467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위원회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조치가 필요함.

(2001년 소요예산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200천원을 포함한 4,800천원이 필요함. 부족분 1,600천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반영예정)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1.1.31 ~ 2.20)결과, 별첨 검토요약서 참조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1. 2. 23)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활동
4.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5.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구 4급이상 공무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분과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2명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분과위원회 : 주요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건의, 환경보전에 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2. 실천분과위원회 :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각종 환경 오염행위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등

③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 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제반회무와 회의록의 정리·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 및 결과조치) ①위원회는 스스로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2.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3. 환경오염현황 조사
4. 기타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환경위원회(이하 “민간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민간환경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자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 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 제5조(분과위원회등) 제3항의 각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분과위원장 1인을 포 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인원 조정 요망 - 위원회에서 구 의제 21 추진 및 주요 환경시책 심의·대안 건의 등 비중있는 기능 수행을 위한 구민, 기업체, 환경관련 단체 등 대표성,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에 대 한 조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위원 구성시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25인 이내로, 각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13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 함